

의안 번호	1989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울산광역시 중구 신청사 등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심사보고서</p>
----------	------	--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2. 9. 7.(수)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2. 9. 7.(수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2. 9. 20.(화)

2. 제안설명 요지(행정지원국장 김혜경)

가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에 따라 신청사 등 건립 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기금의 적용기한 개정: 2022년 12월 31일 → 2027년 12월 31일
-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

다. 근거법규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신옥범)

- 본 개정조례안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에 따라 신청사 등 건립 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고,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제반규정을 검토한 바, 상위법령에 저촉 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 하다고 사료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근거법규
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- 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기금과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은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,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
-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·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